

(붙임)

국기원 임직원 선거중립의무 준수 안내

국기원 임직원은 원장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1. 대 상

- 국기원 사무처 직원 및 국기원 「정관」 제6장부터 제9장에 소속된 사람
- 국기원에서 위촉·임명하거나 실제 국기원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

2. 제한내용

- 가.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- 나. 후보자(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
- 다.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
- 라.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
- 마. 기타 후보자의 선거에 도움이 되는 모든 행위

□ 중립의무위반 예시

- ✓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
- ✓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
- ✓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의 디자인이나 기재내용 등을 조언하는 등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
- ✓ 소견발표회 연설문 작성을 돕는 행위
- ✓ 선거와 관련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
- ✓ 선거사무원을 소개하는 행위

국기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

